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원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0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안 제24조의2 신설)	3
※ 참고자료	13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관련 조문	13

I. 제안경위

2026년 6월 5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IV. 검토의견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도급인(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함)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도급인은(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u>된다.</u> <u>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u> <u>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u> <u>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도급은 생산공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작업방식으로,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면서 공통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산업재해는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바, 원·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① 사업장에 설치·운영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②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제64조제1항제1호) ③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제75조)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제도는 적용대상·구성주체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음.

[표] 현행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한 제도 현황¹⁾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제64조)	노사협의체 (제75조)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정안)
목적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 심의·의결	도급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중요사항 심의·의결	원·하청 노사의 안전·보건사항 공동 심의·의결
적용대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도급사업장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 ※ 구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	도급사업장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고 ²⁾ ,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구성	원·하청 각 사업장 노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	원·하청 사업주	건설 원·하청 노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	원·하청 노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
기능	심의·의결	협의	심의·의결 및 협의	심의·의결
심의· 의결 또는 협의 사항	(법 제24조제2항)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등	(시행령 제79조제2항)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	(법 제75조제3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법 제75조제5항)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협의	(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지원
구성의무	의무	의무	임의	의무
제재조치	구성·운영의무 위반 및 불성실 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성·운영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불성실 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관련 조문 p.13

2) 현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급”이 명칭에 관계없이 제조·건설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고 있어 그 범위가 광범위한바, 개정안은 자신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여 원·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즉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구성됨에 따라 도급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³⁾의 사업주는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현행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함에 따라 근로자가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현행법 제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로, 일반 도급사업장 전반에 걸쳐서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 도급사업장에서도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사결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청을 포괄하는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별표 9)

첫째,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 경우, 일부 심의·의결 사항⁴⁾이 중복될 수 있는바, 동일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법 제24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근거 규정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제15조제1항제1호)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제15조제1항제2호)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제15조제1항제3호)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제15조제1항제4호)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제15조제1항제5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제15조제1항제7호)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2호(제15조제1항제6호)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3호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제2항제4호

4) 개정안 제24조의2(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즉, 개정안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을 원·하청 각각의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는바, 각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상호관계나 조정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각 위원회 간 심의·의결 사항 범위를 조정하거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64조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며 산업

5)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중복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제도의 적용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참고로, 현행법 제75조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보아 제도 간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나 관계수급인이 포함되는지 등은 규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각각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6) 아울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59호)은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인바, 양 개정안을 심사할 경우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와 같이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달리 자신의 사업 일부를 도급하고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도급인에게 구성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 대상이 된 도급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⁷⁾와 유사하게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

-
- 7)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산업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않는데, 심의·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결내용이 관련 법령 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이 회의록 작성·보존 및 심의·의결 내용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문제에 하청 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 제재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 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제조업
 - 다. 토사석 광업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노사협의체]

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나. 안전관리자 1명
-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